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6. 21.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2년 6월 8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6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의 법인화 변경 완료에 따라 변경된 단체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법인명 반영 및 정관상 명칭으로 수정(안 제5조, 제6조, 제10조)

○ 장학생 선정 후 통보 조항 신설(안 제6조)

○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4조, 제9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의 변경된 단체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장학생 선정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 하도록 신설함.
- 그 밖에 조문은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임.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리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485 호 |
|----------|---------|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 새마을운동조직의 법인화 변경 완료에 따라 변경된 단체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나. 정관상 명칭으로 개정(안 제5조)

다. 장학생 선정 후 통보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단체장 약칭 변경(안 제6조, 제10조)

마. 조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2. 4. 14. ~ 5. 4./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을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학금은 1명의 지도자에 대하여 학기 당 자녀 1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 중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장과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영등포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을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지회장”을 “새마을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9조 본문 중 “매학기”를 “매 학기”로, “이내에 장학생에게”를 “이내에”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중 “정학처분”을 “정학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지회장”을 “새마을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4조(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u>새마을지도자</u>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p> <p>1. · 2. (생략)</p> <p>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u>품행이 단정하고 기 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람</u></p> <p>② <u>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u></p> <p>③ (생략)</p> <p>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u>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 회장과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 장 및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 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영등포구 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u></p> |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4조(지급대상) ① ----- --- <u>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u>-----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기능</u>----- ----- -----</p> <p>② <u>장학금은 1명의 지도자에 대하여 학기 당 자녀 1명에 한하여 지급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추천) ----- -- <u>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u></p> |

다)에게 추천한다.

제6조(선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1. ~ 3. (생략)

<신설>

제9조(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2. (생략)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장”-----.

제6조(선정) ① -----

----- 새마을회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9조(지급시기) -----
----- 매 학기 -----
-- 이내에 -----
-- . -----

-----.

제10조(지급정지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학 처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4.·5. (생 략)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4.·5. (현행과 같음)

② 새마을회장-----

-----.